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11-83호

예고기간 : 2011. 6. 8 ~ 28

담당부처 : 소방제도과(02-2100-5334)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장(www.mopas.go.kr)

●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으로 용도변경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용도변경시에도 건축허가부서에서 소방관서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시험자격 부여 등 방화관리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과 포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며,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변경시에도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추진함에 따라, 용도변경시에도 건축부서에서 소방관서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 2)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하게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3항 개정)

- 1) 종전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7일로 규정하여, 간단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기간이 다소 길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고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등은 기간이 다소 짧아 업무처리에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2)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고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100m 이상(약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소규모 건축물은 5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 3)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 등의 선임신고를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방화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자가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정함

라.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 1)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을 선정하고 관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
- 2) 우수 소방대상물을 선정하고 포상함으로써, 자기 책임의 자율 소방관리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급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 수수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2조 및 별표 3)

- 1) 시행령 제23조에서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새로이 분류하도록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들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하여 화재 등 긴급재난시 안전관리를 위한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특급 방화관리자에게 필요한 강습교육과 목 및 시간(56시간)을 정하고

2) 특급, 1급, 2급에 대한 강습수수료를 다른 안전관련 교육기관과 비교하고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하려는 것임

바. 특급, 1급, 2급 방화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기준을 정함(안 제33조)

시행령 제23조에서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새로이 정하도록 개정 추진됨에 따라 1급, 2급 방화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특급 방화관리자에 대한 시험자격기준을 정함

사.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점검인원 및 점검횟수를 조정함(별표 1)

- 1) 종전에는 30층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1회를 하고 있는데, 작동기능 점검은 단순 소방시설의 작동시험으로 대규모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을 정밀하게 점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2) 점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 등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하여는 작동기능점검 대신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6)

행정처분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도록 조정하는 등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내

● 법 률 : 제10756호

공포일자 : 2011. 5. 30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02-2110-6210)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itm.go.kr)

● 개정이유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며,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의2 삭제)

- 1)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전문 기술을 익히지 아니하고도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격 취득이 가능한 실정임
- 2)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실무교육 강화(안 제18조 신설, 안 제30조의2)

- 1) 한번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갱신하지 아니하고도 평생 업무가 가능하여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없으며, 연수교육도 임의사항에 불과하여 최신 기술 습득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함
- 2)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며, 자격의 갱신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 1) 건축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벌규정에 면책조항 추가(안 제40조)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40조)

마.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부칙 제5조제2항)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내

● 부 령 : 제216호

공포일자 : 2011. 5. 17

담당부서 : 소방장비과(02-2100-5385)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www.nema.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사감리현장을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보도록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소방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담부증여계약의 해제



글_박기동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만해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언론중계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만해(滿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02-595-9191)

Q 조상제사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
게 땅을 물려주었는데, 아들이 조상제사도 모시지 않고, 부모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놈졸증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부인(78세)을 간병하면서 2009년 거듭되는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떠밀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45% 상당(논, 밭, 임야 등 총 2만 8,000m²)을 증여해 주면서 위 땅을 증여하는 대가로 아들로부터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실 것’,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할 것’, ‘부모가 살아 있을 때까지 땅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지 않을 것’의 3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재산을 상속(증여)받자마자 아들이 태도를 돌변하여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몰래 이사한 뒤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부모를 피하고 2010년부터는 아예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고, 이후 아버지 몰래 땅을 팔려다 실패하자 일부를 담보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테 대하여, 법원에서는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아버지의 청구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조상제사와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증여계약을 이행한 후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하였다고 주장할 것인데, 증여할 당시 아들이 조상제사를 모시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입증하여야만 아버지가 승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지식경제부) 사례

- 대표자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감리업을 운영하다
감리업만 양도한 후 기존 대표자 명의로 신규
감리업을 등록한 경우 기존의 특허가 개발실적
평가 시 가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지식경제부 고시[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기목의 개발실적 평가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감리업 양도 후, 신규 등록한 감리업체 대표자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대표자의 특허는 개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2항에서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 · 양수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
을 양수한 자는 이를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뿐, 양도한 자에 대하여 다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競業禁止(영업상 경쟁을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0. 6)

- 전성 관련하여 전기감리업무로 현장에 상주 근무 시 소방 및 통신 관련하여 감리원 자격이
되면 겸직하여 소방 및 통신 상주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요?

• 법제처의 법령해석(2007.2.26)에 따라
– 전기 상주감리원은 소방 및 정보통신 공사감리의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PQ평가 시
발견되는 때에는 실격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0. 16)

3

• 당초 250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감리자 지정이 되어 착공신고를 하였고, 설계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계속해서 감리업무를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

• 감리원(상주, 비상주)의 경력 중 발주청 소속으로 담당업무가 공사감독일 경우 종복되는 현장(현장일수 중복)에 대하여 중복기간은 한 개의 현장으로 산출하여 감리원 경력을 평가하는지 아님, 중복되는 기간은 참여감리원 경력평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부칙(제7740호, 2005.12.23) 제2항에서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6.6.24)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업자가 계속해서 감리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0. 19)

- PQ평가에서 공사감독 경력이 중복되는 여러 개의 현장에 대하여는 본인 경력 평가에 가장 유리한 한 개의 현장으로 산출하여 평가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0. 26)